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1. 17.(목) 11:00 < 11.18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17.(목)
담당 부서	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	책임자	과 장 김기호 (044-203-58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성수 (044-203-5888) 사무관 남의호 (044-203-5886)

제430차 무역위원회,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

-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및 기술설명

□ 산업통상자원부 **무역위원회**(위원장 이재민)는 2022.11.17(목) 제430차 회의를 개최하여 **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**를 결정하였다. 아울러, **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한 기술설명회**를 개최하였다.

【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】

□ 우선, 무역위원회는 「**분쇄조리기 손잡이*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**」를 **개시하기로 결정**하였다.

* 유리조리용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온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손잡이

○ 이는 **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로닉**(신청인)이 **국내기업 A**(피신청인)를 상대로 **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**('22.10.4)함에 따른 것이다.

- **신청인**은 **피신청인**이 **자사의 특허권***을 **침해**하는 **분쇄조리기 제품을 수입**하였으며, 이는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**하였다.

* 유리조리용기를 구비한 조리기기의 손잡이 구조(제10-1826760호), 조리기기용 고정식 손잡이 구조 및 이를 구비한 조리기기(제10-2112582호)

○ **무역위원회**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,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**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로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**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.

- 조사개시 후 **통상 6~10개월** 동안 서면조사, 현지조사,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**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**하며,

- 피신청인이 **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**하는 경우, 피신청인에게 수입·판매 중지명령, 폐기처분 등 **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**가 가능하다.

【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기술설명회 】

□ 또한, 무역위원회는 **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**(신청인)가 **국내기업 B**와 **해외기업 C**(피신청인)를 상대로 신청한 「**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**」건에 대한 **기술설명회를 개최**하였다.

○ 금번 **기술설명회**는 2022.4.4(월) 조사개시 결정 이후 **당사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**하여 불공정무역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**보장된 방어권을 행사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**투명하고 공정한 판정**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.

* 참석현황 : 무역위원회 위원, 신청인측 대리인, 피신청인측 대리인 등 약 20여명

○ 향후, **무역위원회**는 **기술설명회 결과와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**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하여 **판정할 예정**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
조사신청
(신청인 ⇨ 무역조사실)

- 누구든지, 서면신청(조사신청서+증빙자료)
-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

직권조사

-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

조사개시 결정
무역조사실 / 위원회보고

① 신청기간,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, 보완
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

잠정조치

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(담보제공)
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
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
무역조사실

- 서면조사 원칙,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
- 외부전문가 감정, 기술설명회 등
-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
-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·판정

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

- 제재조치(안)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(행정절차법 제21조, 제22조)

산업부 장관 의견청취

- 시정조치(안)에 대해 산업부장관(소관과) 의견조회

최종판정
무역위원회

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(2월씩 2회 연장 가능)
·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·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
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

제재조치 시행
무역위원회 ⇨ 피신청인

- 시정조치 명령(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)
- 과징금 부과

이의신청
(피)신청인 ⇨ 무역위원회

-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

이의신청 심의·결정
무역위원회

-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(30일 연장 가능)

참고 2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

□ 조사 개요

○ **(신청인)** 주식회사 로닉(특허권자, 대표: 김홍배)

* 가정용 조리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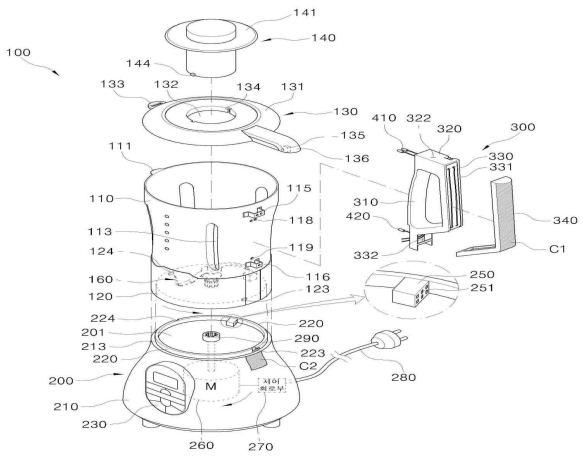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기업 A

*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 및 판매

○ **(특허권)** 조리기기용 손잡이 구조 관련 특허 2건(제10-1826760호 등)

○ **(조사대상물품) 분쇄조리기***

* 두유, 죽, 해독 및 청혈주스를 요리 할 수 있는 가열 믹서기

특허의 주요 도면	조사대상물품
	

○ **(신청이유) 피신청인이 특허권 침해 혐의**가 있는 **조사대상물품을 해외에서 수입**

□ 향후 계획

○ 조사개시 결정('22.11월) → 무역위 개시보고('22.11월) →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, 전문가 감정 등 실시('22.11월~) →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*('23.4월, 잠정)

* 조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정 일정은 변동 가능

참고 3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

□ 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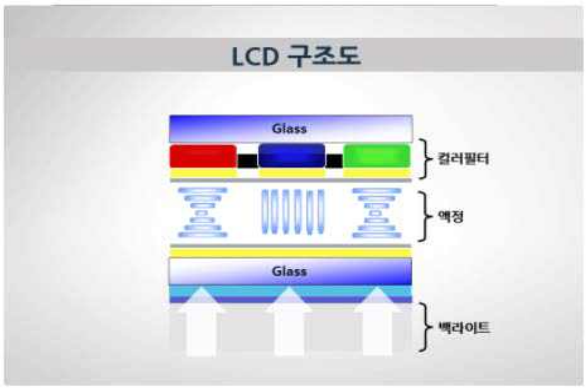
○ **(신청인)**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(특허권자, 대표: 리우치청)

○ **(피신청인)** ① 국내기업 B, ② 해외기업 C

○ **(특허권)** 액정표시장치(LCD)* 관련 특허 4건(제10-0488953호 등)

* 디스플레이는 **LCD**(Liquid Crystal Display)와 **OLED**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로 구분되며, OLED와 달리 **LCD는 빛을 내기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**함

○ **(조사대상물품) 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하는 텔레비전 수상기**

액정표시장치(LCD) 구조도	조사대상물품
	

○ **(신청이유) 피신청인 2**가 신청인의 **특허권 침해 혐의**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**해외에서 국내로 공급**하였고, **피신청인 1**이 이를 **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**

□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

○ 조사개시 결정('22.4월) → 무역위 개시보고('22.4월) → 질의서 송부 및 서면조사('22.4~10월) → 기술설명회('22.10월) →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*('23.1월, 잠정)

* 조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정 일정은 변동 가능